

의정부지방법원 2024. 4. 18 선고 2023나203741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의정부지방법원 2024. 4. 18 선고 2023나203741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3. 1. 17 선고 2022가단101250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서울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와

담당변호사 김말금, 이준석

피고, 항소인 A

변론종결 2024. 3. 21.

판결선고 2024. 4. 18.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3. 1. 17. 선고 2022가단101250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8. 9. 4. 체결된 증여계약을 25,5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5,5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의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8. 9. 4.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B에게 제1항 기재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18. 9. 19. 접수 제10328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그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3면 제14 내지 20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1) 이 사건 증여 당시 B의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지분과 서귀포시 소재 숙박시설인 E건물 F호(이하 ‘이 사건 서귀포 부동산’이라 한다)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3,

4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감정인 I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이 사건 증여 당시 시가가 91,000,000원인 사실, 2019.

1. 15. 기준 이 사건 서귀포 부동산의 가액이 127,0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제1심판결 제5쪽 제8 내지 10행의 “다. 소결론”항을 다음과 같이 고쳐쓴다.

『다.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방법

1) 관련 법리

어느 한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친 경우에 다른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는 그와 중첩되는 범위 내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된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558 판결, 2005. 5. 27. 선고 2004다67806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수익자는 어느 채권자에게 자신이 배상할 가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한 때에는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해행위 취소 판결에서 가장 다액으로 산정한 공동담보가액에서 자신이 반환한 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는 범위에서만 청구이익의 방법으로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할 수 있고, 취소 채권자는 공동담보가액에서 수익자가 이미 반환한 가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여전히 가액배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22. 8. 19. 선고 2018다219208 판결).

2) 원상회복 방법

살피건대, B의 또 다른 채권자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2019. 9. 18. 피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9가단128880호로 이 사건 증여의 취소를 구하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실, 위 사건에서 피고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게 7,000,000원을 가액배상하는 내용의 2021. 1. 15.자 조정예 갈음하는 결정이 2021. 2. 9. 확정된 사실(이하 ‘선행조정’이라 한다), 피고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게 선행 조정에 따라 가액배상금 7,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가 다른 취소 채권자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게 가액배상으로 이미 지급한 7,000,000원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가 취소를 구할 권리보호이익이 없게 되므로, 이 사건 지분 전체의 반환을 명할 수 없다.

다만 사해행위를 전부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하는 채권자의 주장 속에는 사해행위를 일부 취소하고

가액의 배상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채권자가 원상회복만을 구하는 경우에도 법원은 가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이에 이 사건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공동담보가액에서 피고가 반환한 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가액 배상을 명하도록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선행조정 당시 가액배상을 통해 원상회복을 완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청구 전체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선행조정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시가감정이 이루어진 적은 없고, 이 법원 감정인 I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 당시(2018. 9. 4.)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91,000,000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있었던 2021. 1. 15. 시가는 98,000,000원인 사실이 각 인정된다. 나아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9. 4. 22. 채권최고액을 69,000,000원으로,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D으로, 채무자를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경료되었고, 선행조정 당시 그 피담보채무액이 50,000,000원이었던 사실과 이 사건 증여일 및 이 사건 변론 종결일 당시 그 피담보채무액이 50,000,000원인 점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를 종합하면 선행조정 결정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B 지분(1/2) 중 일반채권자들의 담보로 제공된 부분의 시가는 24,000,000원(= 감정평가액 98,000,000원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50,000,000원을 공제하고 난 48,000,000원의 1/2)이라고 할 것인바, 피고가 선행조정에 따라 그 가액의 일부인 7,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것만으로 원고의 청구 전부가 권리보호의 이익을 흠결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가액배상의 범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갑 제2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 감정인 I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① 2023. 12. 8. 기준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115,000,000원이고, 위 일시에 가까운 당심 변론 종결일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도 같은 금액일 것으로 보인다[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70,000,000원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감정 과정 등에서 있을 수 있는 사소한 오류의

가능성을 지적하는 것만으로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감정인의 감정평가 결과는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등 참조), 당심 감정인의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제출된바 없다].

②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9. 4. 22. 채권최고액을 69,000,000원으로,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D으로, 채무자를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경료되었고, 선행 조정 당시 그 피담보채무액이 50,000,000원이었던 사실, 이 사건 증여일 및 이 사건 변론 종결일 당시 그 피담보채무액이 50,000,000원인 점은 앞서 2)항에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와 B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은 이 사건 지분의 공동담보가액 32,500,000원{= (당심 변론종결시 시가 115,000,000원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50,000,000원) × 지분비율 1/2}에서 피고의 기존 가액배상액인 7,000,000원을 공제한 차액 즉, 25,500,000원(= 32,500,000원 - 7,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으로 25,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을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재판장 판사 함종식, 판사 김혜령, 판사 홍유정

별지